

[별표 2] <개정 2013.9.9> [시행일:2014.1.1] 제2호과목  
[시행일:2015.1.1] 제2호타목

**과태료의 부과기준**(제1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법조문         | 과태료 금액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차 위반 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| 가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| 법 제60조제2항제1호   | 60     | 80    | 100      |
| 나.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·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| 법 제60조제2항제2호   | 100    | 140   | 200      |
| 다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1항제1호   | 200    | 250   | 300      |
| 라.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| 법 제60조제1항제2호   | 150    | 200   | 250      |
| 마.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 규제기준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|        |       |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초과하여 소음·진동을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1) 소음원이 공장, 사업장, 확성기,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| 60  | 100 |     |
| 2)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             | 120 | 200 |     |
| 바. 법 제22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|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|     |     |     |
| 1)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         | 140 | 200 |     |
| 2)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             | 80  | 100 |     |
| 사.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 | 100 | 140 | 200 |
| 아.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·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제3호   | 100 | 140 | 200 |
| 자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제5호   | 10  | 10  | 10  |
| 차.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제6호   |     |     |     |
| 1)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 (A)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| 20  | 20  |     |
| 2)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             | 60  | 60  |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(A) 이상 4dB(A) 미만<br>초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
| 3)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dB<br>(A) 이상 초과하거나 경<br>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<br>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00 | 100 | 100 |
| 4)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<br>과한 경우로서 소음기(배<br>기관을 포함한다) 또는<br>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<br>떼어버린 경우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00 | 100 | 100 |
| 5)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<br>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<br>추가로 부착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60  | 60  | 60  |
| 카.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<br>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제7호  | 10  | 10  | 10  |
| 타.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<br>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<br>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<br>부착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1항제3호  | 75  | 150 | 300 |
| 파.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<br>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<br>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·<br>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1항제4호  | 75  | 150 | 300 |
| 하.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<br>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<br>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제8호  | 60  | 80  | 100 |
| 거.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<br>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<br>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<br>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<br>허위로 제출한 경우 | 법 제60조제2항제9호  | 60  | 80  | 100 |
| 너.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60조제2항제10호 | 60  | 80  | 100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